

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발의경과

본 규칙안은 2022년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2022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「청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)

4. 검토의견

본 규칙안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, 불명확한 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